

학사행정팀 · 2026학년도 2학기

공결 매뉴얼

행정 업무 처리 안내 (학생용)

공결 인정 기준부터 학생 신청 절차까지

공결이란?

1~6호

공결이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, 총장이 허가한 결석을 말합니다.

호	공결 사유	인정 기간	제출 서류
1	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	사망당일 포함 5일 이내 (토·일·공휴일 포함)	1. 사망진단서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2	형제·자매 사망	사망당일 포함 3일 이내 (토·일·공휴일 포함)	1. 사망진단서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3	본인 결혼	5일 이내	• 혼인 증빙 서류
4	징병검사, 예비군, 병무 관련 사항	통지서 명기 일자	• 징병검사필증, 예비군훈련필증 (통지서 인정 X) • 교내 예비군 훈련 참석자의 경우, 서류 업로드 불필요 (단, 개별 참석자는 서류 업로드 필수)
5	본인입원 (질병·사고 입원)	2주 이내, 학기별 1회	• 입원 기간이 기재된 입퇴원 사실확인서(종합병원 발행 진단서)
6	국가·지자체 행사, 학내외 특별활동 참여	행사 기간	1. 공결허가원 2. 협조요청 공문 ※ 학생 제1전공 학과장이 승인하는 행사에 한함

주의 인정사유 1호~6호는 학기당 수업시간의 1/6미만 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.

공결 사유 안내

7~11호

아래 7~11호는 수업시간 1/6 제한에 속하지 않는 예외 공결입니다. (코로나 관련 공결 포함)

호	공결 사유	인정 기간	제출 서류
7	여학생 생리공결	매월 1회(학기별 4회) 시험기간 불인정	1. 트리니티 '생리공결신청' 탭에서 작성 및 출력 2. 7일 이내 수업 교수님께 제출 (본인 직접 작성, 희망 날짜의 전날·당일 신청 가능)
8	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별도관리(격리)가 필요한 경우	진단서 표기 기간	- 격리기간이 기재된 진단서(의사소견서) ※ 안정가료 기간은 불인정
9	장애학생의 신체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진료	진료 기간	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(의사소견서)
10	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한 실습	실습 기간	- 공결허가원 - 협조요청 공문
11	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(취업학생 공결 포함)	허가 기간	- 공결허가원 - 협조요청 공문 등 (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, 별도 문의)

주의 위 표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공결 인정이 불가합니다.

공결 신청

1~11호*

- 1~11호 해당 (6호, 7호, 10호, 11호 제외)

① 공결신청

- 경로: 트리니티 종합포털시스템 - 학사정보 - 수업/성적 - '공결신청'
- 기한: 모든 조항의 공결은 11월 25일(수) 17:00까지 서류 제출 및 출력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

② 제출서류 구비 및 업로드

- 공결 허용기준 확인 후, 각 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업로드
- 동일한 사유라도 신청한 날짜별로 증빙서류를 각각 업로드
- 기한: 공결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(예상치 못한 공결의 경우 1주일 이내)
- 업로드한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, 학과에서 안내할 예정이므로 수정된 서류를 재업로드 (재업로드 완료 시 공결 인정)
- 공결 신청 시 수업계획서에 입력된 공결 대체과제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출결 인정(4호 제외)

문의 공결 관련 서류 등 기타 문의: 학사행정팀 (02-2164-4288) / 학생의 제1전공사무실

6호 (국가·학내외 행사 참여)

6호*

① 공결허가원 작성

- 공결허가원 작성: 홈페이지 학사지원 – 학사정보 – 각종서식
- 각 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구비 (트리니티로 신청 시, 인정 불가)
- 학내·외 행사 참여 시, 학생의 제1전공 학과장의 승인 하에 공결 인정 (전공미배정자는 학부대학 학과장 승인)
- 타전공 과목에 대한 공결도 동일하게 적용
- 개인 목적(외부 기관 취업 면접 등)은 인정 불가

② 제1전공사무실 제출

- 기한: 공결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(예상치 못한 공결의 경우 1주일 이내)
- 타전공 과목에 대한 공결 서류도 학생의 제1전공 사무실에 제출
- 해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결을 원할 시 사전에 승인 여부 확인

문의 공결 관련 서류 등 기타 문의: 학생의 제1전공사무실

7호 (생리공결)

7호*

① 생리공결 신청

- 경로: 트리니티 종합포털시스템 – 학사정보 – 수업/성적 – '생리공결신청'
- 공결 희망 날짜의 전날·당일에만 신청 가능하며, 일자 변경 및 취소 불가
-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후 7일 이내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

② 인정 범위 안내

- 공결을 신청할 경우, 수업계획서에 입력된 공결 대체과제를 제출시 담당교수가 출결을 인정

10호·11호 (교육실습 및 기타 사유)

10~11호*

① 10호 (교육실습 및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)

- 공결허가원 작성: 홈페이지 학사지원 – 학사정보 – 각종서식
- 교직과에 제출 (기한: 공결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, 예상치 못한 공결은 1주일 이내)

② 11호 (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

- 취업공결 및 제1호~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사유에 한하여 신청 가능 (학사행정팀 별도 문의)